

2024학년도 2학기 문헌연구보고서



이산가족 상속제도의 법적 검토와 통일 대비 해결과제

이름	정선우
전공	공법학전공
학번	20230701

목차

I. 서론	4
II. 북한과 북한 주민의 지위	5
1. 서설	5
2. 북한의 지위	6
가. 영토조항 우위론	6
나. 통일조항 우위론	6
다. 헌법변천론	6
라. 대법원 관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7
3. 북한 주민의 지위	7
4. 소결	8
III. 남북한 상속법제 비교 및 남북가족특례법 검토	9
1. 서설	9
2. 법원(法源)	9
3. 상속법 총칙	10
가. 사망의 범위	10
나. 상속의 원칙	11
다. 상속회복청구권	11
4. 법정상속	12
5. 남북가족특례법 검토와 쟁점	14
가. 서설	14
나. 목적, 기본원칙, 재판관할	15
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15
(1). 서설	15
(2).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16
(3). 인지청구의 소	16
라. 상속재산반환청구권	17
마. 상속회복청구권	18
바. 재산관리인 제도 및 재산관리 규정	21
IV. 분단국가 상속제도 검토	22
1. 독일	22
2. 중국	23
가. 대만	23
나. 조선족	23
3. 비교	24
V. 이산가족 상속제도의 미비점과 통일 대비 해결과제	25
1. 서설	25
2. 소송만을 통한 現 이산가족 상속제도와 통일 대비 해결과제	25
3.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인 제도의 미비와 통일 대비 해결과제	27
4. 통일 이후 남북가족특례법의 한시법화(化)와 부칙 개정(가)안	28
5.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조항 개정(가)안	29
VI. 결론	31
참고문헌	33

I. 서론

1945년 8월 15일 한반도에 독립의 기쁨이 찾아온 것도 잠시,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을 겪으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이러한 분단의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져 남과 북의 정치·경제·사회·언어·문화 등 생활 전반이 이질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분단으로 가족과 헤어진 이들이 느끼는 이산의 아픔은 변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등록된 이산가족 신청자는 총 134,158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37,806명, 약 28%에 불과하다.¹⁾ 또한, 전후(戰後) 7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기에 생존자 중 무려 84%가 70대 이상으로 고령층에 해당하며, 사망 등의 이유로 이산가족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²⁾

정부에서는 권영세 前 통일부 장관이 2022년 9월 이산가족 관련 남북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바 있고,³⁾ 국회에서는 태영호 前 의원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산가족의 날’을 새로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등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전제로 하는 남북문제의 특성상 현시점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는 문제의 실질적 해결이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이산가족의 연령대가 높고, 북한 당국이 근래에 내세우고 있는 ‘적대적 2국가관계론’, ‘통일 불가론’의 영향으로 일각에서는 ‘이산가족’ 개념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

이와 더불어, 이산가족 간의 상속문제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필자는 지난 5월 “북한 주민이 한국 법원에서 인정받은 상속재산이 46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북측 상속인에게 반출된 돈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⁶⁾는 신문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다. 이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재산이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상속되는

1) 통일부(2024.09.12.), 「2024년 8월 이산가족신청자료 통계」,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stat/list.do?mid=SM00000129\(2024.11.11.\)](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stat/list.do?mid=SM00000129(2024.11.11.)).

2) 위와 같음.

3) 정유진(2022.09.08.), 「권영세, ‘이산가족 해결’위한 남북당국 간 회담 제안, 시사포커스,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982\(2024.09.15.\)](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982(2024.09.15.)).

4) 홍금표(2023.02.28.), 「태영호 발의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됐다…매년 음력 8월13일」,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6932/\(2024.11.11.\)](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6932/(2024.11.11.)).

5) 김환용(2024.02.23.), 「한국 내 이산가족, 북한 김정은 ‘남북 교전국’ 선언에 절망…통일부 “문제 해결 포기 안해”」, VOA, [https://www.voakorea.com/a/7499434.html\(2024.11.11.\)](https://www.voakorea.com/a/7499434.html(2024.11.11.)).

6) 이형민(2024.05.09.), 「北주민 인정받은 국내 상속재산 460억… 법무부 “반출 사례 0”」,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5161168\(2024.11.11.\)](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5161168(2024.11.11.)).

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탐구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재의 이산가족 상속문제를 단지 법적으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며 통일 한반도에 대비한 실질적 법·제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필자는 “**이산가족 상속제도의 법적 검토와 통일 대비 해결과제**”를 주제로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산가족 상속제도를 법적 측면에서 면밀히 살피고, 향후 통일 한반도가 마주해야 할 상속에서의 해결과제와 그 방안을 제시하려는 데에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헌법 4조를 통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일조하려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남북한의 상속 관련 법제 비교, 사법부 판례 평석, 분단국가 사례 탐구 등의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부연하여 본고는 ①북한과 북한 주민의 지위를 법적으로 규명한 후, ②남북한 상속법제 비교 및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을 검토하고, ③독일, 중국 2개 분단국가의 상속제도를 비교론적으로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④현재 이산가족 상속제도의 미비점을 나열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그 방안을 논하며 결론을 맺는 것으로 순서를 정하였다. 또한, 서술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 북한 주민, 대한민국, 북한은 각각 ‘남한 주민’, ‘북한 주민’, ‘남한’, ‘북한’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II. 북한과 북한 주민의 지위

1. 서설

북한 주민에게 남한 주민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인정 및 우리 법 적용을 위하여서는 우선 북한 주민에 대한 지위가 정립되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관계에 놓여있으며, 북한에 대한 법적 지위 정립에 따라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도 결정되는 것이다.⁷⁾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조와 제4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조(이하 ‘영토조항’)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⁸⁾ 또한 제4조(이하 ‘통일조항’)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⁹⁾ 영토조항을 문언 그대로 이해하면 북한 지역(휴전선 이북지역)에도 우

7) 정구태(2013), 「북한주민의 혼인·친자·상속관계소송에 관한 諸問題」, 『고려법학』, 제7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81쪽.

8) 대한민국헌법 제3조.

9) 대한민국헌법 제4조.

*본 연구를 개진함에 있어서 서술상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북한’, ‘대한민국 국민’, ‘북한 주민’은 각각 ‘남한’, ‘북한’, ‘우리 국민’, ‘북한 주민’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리 헌법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북한지역에 대한 북한 정권의 실질적 지배를 부정하기에 통일조항과 상충할 여지가 존재한다.¹⁰⁾ 따라서 양자의 내용이 반대된다는 점에서 양자 조항 간 해석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근거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가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북한의 지위

가. 영토조항 우위론

이 입장은 ①헌법이 대한민국 영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타국에 대한 침략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②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이고, ③②에 따라, 휴전선 이북지역은 불법적 반국가단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배 중인 미수복지역이며, ④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과 결부되는 사안임을 근거로 북한지역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¹¹⁾ 그러나, 이 입장은 UN 가입 등 국제사회에서 엄연히 국가로서 인정받고있는 북한 자체를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류지성에 따르면 영토조항은 통일의 결과론적 조항이며,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과 헌법의 목표인 지향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¹²⁾

나. 통일조항 우위론

이 입장은 ①통일조항에 앞서 영토조항이 나중에 도입된 신법(新法)이므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통일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 혹은 ②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보고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통일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를 내세운다.¹³⁾ 그러나, 이 입장은 영토조항을 남북관계에만 국한하여 파악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또한 제성호에 따르면 ‘특별법 우선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양자의 법의 적용범위가 중복되어 좁은 범위의 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지만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은 적용범위가 중복되는 법이 아니다.¹⁴⁾

다. 헌법변천론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법으로서 최고규범성이 인정되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헌법규범이 헌법현실과 궤를 같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서로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조문의 변화는 없지만 헌법의 의미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이를 헌법변천

10) 성낙인(2021), 『헌법학』, 법문사, 324쪽.

11) 김정현(2023),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미래 지향적 관계」, 『북한법연구』, 제30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238쪽.

12) 류지성(2024),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 『법제논단』, 2024년 9월호, 법제처, 220쪽.

13) 제성호(2004),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주요 쟁점과 개정문제」, 『서울국제법연구』, 11권 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183쪽.

14) 위의 책, 같은 쪽.

이라고 한다.¹⁵⁾ 영토조항을 헌법변천으로 보는 입장은 영토는 헌법개정에 국한될 것이 아닌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헌법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변화한 헌법현실에 따라 영토조항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본다.¹⁶⁾ 그간의헌법개정사로 미루어 보건대 통일조항은 1987년 제9차 개헌 때 신설되었다. 또한,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 9월 남북한은 각각 ‘국가’의 자격으로 UN에 동시 가입하였다. 동년 12월 남북한은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국가 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¹⁷⁾ 이에 더하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헌법규범 그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헌법현실에는 변화가 생겼다는 점, 다시 말해 헌법변천이 발생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류지성에 따르면 이러한 헌법변천론에 입각하더라도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 헌법적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영토조항은 변화한 남북관계의 현실에서도 중요하고 유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라.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우리 대법원은 북한의 지위에 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¹⁹⁾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²⁰⁾ 이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 사법부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입각하여 영토조항을 통하여 남북한의 단일국가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통일조항을 통하여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적 지위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북한 주민의 지위

북한의 지위와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의 지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북한법과 국제법, 우리법, 그리고 남북관계의 특수성까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²¹⁾에 따라 북한의 국적을 가지게 된다. 즉, 국제

15) 성낙인(2021), 앞의 책, 62쪽.

16) 성낙인(2021), 앞의 책, 324쪽.

17) 김명기(1992.03.16.), 「기본합의서상 잠정적특수관계의 의미」,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36956\(2024.11.11.\)](https://www.lawtimes.co.kr/news/136956(2024.11.11.)).

18) 류지성(2024), 앞의 책, 222쪽.

19)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20) 헌법재판소 1993. 07. 29., 92헌바48 결정.

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은 북한 국적의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남북관계의 차원에서는 북한 주민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최소한 준(准)국가적 실체인 북한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²²⁾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에서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 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²³⁾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영토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도 이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다만 북한 주민이 출생과 동시에 남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잠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규창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사실상 국가인 북한 (국)적 소유자인 준외국인이면서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라고 볼 수 있다.²⁴⁾ 또한 우리 대법원은 “조선국적 취득 후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²⁵⁾ 이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 사법부는 영토조항을 통하여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함과 동시에 남북한의 단일국가성을 인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 즉 남한 주민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남한법(예컨대, 「민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상속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에 따라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이며, 그와 동시에 북한은 반국가단체성을 띠지만 남한과 협력, 대화하여야 하는 동반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은 북한 국적을 보유하고 동시에 남한 국민의 지위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중적 지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남북가족특례법 또한 북한과 북한 주민의 이중적 지위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2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²⁶⁾고 명시한다. 이러한 북한과 북

21) 이 법 제2조 제1호는 “공화국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를 국민으로 보며, 동법 제5조 제1호는 “공화국 공민사이에 출생한자”는 출생으로 북한 국적을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2) 이규창(2022),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통일과 법률』, 제49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41쪽.

2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24) 이규창(2022), 앞의 책, 42쪽.

25) 위와 같음.

26) 법무부 통일법무과(2016.01.1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2%A8%EB%B6%81+%EC%A3%BC%EB%AF%BC+%EC%82%AC%EC%9D%B4%EC%9D%98+%EA%B0%80%EC%A1%B1%EA%B4%80%EA%B3%84%EC%99%80+%EC%83%81%EC%86%8D+%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2024.11.12.\).](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2%A8%EB%B6%81+%EC%A3%BC%EB%AF%BC+%EC%82%AC%EC%9D%B4%EC%9D%98+%EA%B0%80%EC%A1%B1%EA%B4%80%EA%B3%84%EC%99%80+%EC%83%81%EC%86%8D+%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2024.11.12.).)

한 주민에 대한 이중적 지위의 태도를 견지하며 본격적으로 이산가족의 상속문제를 남한법, 북한법, 그리고 남북가족특례법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남북한 상속법제 비교 및 남북가족특례법 검토

1. 서설

이산가족 상속문제의 쟁점을 논하기 전에 남한의 상속법제와 더불어 우선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북한의 상속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사법부가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사법적 권리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 상속법과 남북가족특례법 적용 또한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²⁷⁾ 이에 더하여, 남한과 북한의 상속법제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가족특례법을 검토하여 현행 제도의 쟁점, 보완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후술할 이산가족 상속문제의 미비점과 결부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이산가족 상속문제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개인 간의 관계, 이른바 사법(私法)관계 위주로 조명하기로 한다.

2. 법원(法源)

남한의 상속법제는 「민법」(이하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민법 제5편 상속(제997조 내지 제1118조)에서 해당 법제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3개의 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제1장은 상속법 총칙 및 법정상속에 관한 내용, 제2장은 유언 및 유증에 관한 내용, 제3장에서는 유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²⁸⁾ 본고에서는 제1장의 내용만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 상속법제의 공식 제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이하 ‘북한 상속법’)이다. 민법에서 상속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상속법을 민법과 별개로 분리하여 규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북한 상속법은 4개의 장과 5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상속법 총칙, 제2장은 법정상속, 제3장은 유언상속과 증여, 제4장은 상속집행자 및 상속재산관리자, 상속재산의 분배 및 그에 따른 분쟁 해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1장, 제2장의 내용만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북한 상속법과 별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이하 ‘북한 가족법’)도 존재하며, 이 법에서도 상속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가족법 제5조는 상속의 보장원칙을, 제5장(제46조~제53조)은 상속순위, 상속몫, 상속권의 박탈, 상속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유언상속, 사망자의 빚에 대한 책임, 상속기간, 상속분쟁의 해결 등

27) 이성우(2011),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상속문제와 그 해결방안」, 『통일과 법률』, 제7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56쪽.

28) 문선혜(2019), 「통일 이후 남북한 상속법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과 법률』, 제38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66쪽.

총 8개의 조문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 ‘북한 헌법’) 제24조 제4항에 상속제도의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이하 ‘북한 민법’) 제63조는 북한 헌법의 상속제도 보장 원칙을 재확인해 준다.²⁹⁾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개인의 상속권을 헌법, 민법, 가족법, 상속법에 명시하고 보장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볼 만 하다.³⁰⁾

<상속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법 이외의 북한법제>³¹⁾

I. 북한 헌법 제24조 제4항 :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II. 북한 민법 제63조(상속권)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있다.

III. 북한 가족법 제5조(상속권의 보장원칙)

상속은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보호의 계속이다.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3. 상속법 총칙

가. 사망의 범위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이다³²⁾. 우리 민법은 제99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개시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망은 일반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실종선고³³⁾, 인정사망³⁴⁾을 포함한다. 북한 상속법은 제7조 제1항, 동조 제2항에서 각각 자연사망과 인정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을 명시하고 있다.

29) 문선혜(2019), 위의 책, 67쪽.

30) 박훈·성중모(2015), 「통일시대 상속제도의 방향과 법교육」, 『법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50쪽.

31) 국가정보원(2019), 『북한법령집 上』, 국가정보원, 34, 194, 199-200, 218쪽.

32) 법제처(2024.08.15.), 「상속의 개념 및 대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1&cciNo=1&cnpClsNo=1\(2024.11.12.\)](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1&cciNo=1&cnpClsNo=1(2024.11.12.)).

33) 실종선고란 사람의 실종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선고를 말한다.

34) 인정사망이란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경우에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상속의 원칙

우리 민법은 ‘일반상속의 원칙’을 취하기에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일체가 상속되기에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가 제한된다. 북한은 소유권을 ①국가소유권(전체 인민의 소유이며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항만뿐 아니라 체신, 중요공장과 기업소, 은행 등에 대한 소유 등이며, 대상에는 제한이 없음.³⁵⁾), ②사회협동단체소유권(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며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이 그 대상임.³⁶⁾), ③개인소유권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개인소유권은 다시 가정재산³⁷⁾과 개별재산³⁸⁾으로 양분된다. 즉, 북한에서는 개인소유권 中 개별재산에 해당하는 것만이 상속의 대상이 되며, 이는 북한 상속법에 6가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³⁹⁾

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⁴⁰⁾이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진정상속인이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우리 민법과 북한 상속법에서 모두 인정된다. 우리 민법상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이를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 한편, 북한 상속법상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 북한 상속법에서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요한에 따르면 제척기간은 법률에서 예정한 특정한 권리의 효력이 유지되는 법률이 예정한 존속기간을 말하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러한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뜻한다.⁴¹⁾

상속법 총칙에 관한 남한⁴²⁾과 북한⁴³⁾의 상속법제

I. 사망의 범위

-우리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35)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2024), 『2024 북한 이해』, 국립통일교육원, 182쪽.

36)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2024), 위의 책, 182-183쪽.

37) 가정재산이란 해당 가정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말하며 그 소유권은 북한 민법 제61조에 따라 가정성원들이 공동으로 가지기에 가정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이 불가능하다.

38) 개별재산이란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 가지고 왔거나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서 개인적 성격을 띠는 재산이다.

39) 문선혜(2019), 앞의 책, 71쪽.

40)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을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41) 김요한(2024.09.17.), 「소멸시효 뜻과 중단사유, 제척기간은?」,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puppuppappa/223585982361>(2024.11.12.).

-북한 상속법 제7조(상속의 개시)

상속은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의하여 시작된다.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대한 공증기관의 인증에 의하여서도 상속은 시작된다.

II. 상속의 원칙

-우리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북한 상속법 제13조(상속할 수 있는 재산)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로동에 의한 분배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2. 국가 또는 사회의 추가적혜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3. 개인부업경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4. 살림집, 도서, 화폐, 저금,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료전기재
5. 각종 재산상청구권과 채무
6. 그밖에 다른 공민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같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III. 상속회복청구권

-우리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북한 상속법 제14조(상속권의 시효)

상속받는자는 상속권이 침해당한 것을 안 때부터 1년안으로 그것을 회복시켜줄데 대한 청구를 재판기관에 할수 있다. 그러나 시효기간과 관련하여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상속권회복에 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수 없다.

4. 법정상속

우리 민법은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규정한다.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1·2순위 상속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속권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

42) 민법 제997조, 제999조, 제1005조.

43) 국가정보원(2019), 앞의 책, 285쪽.

자 모두 망자(亡者)이거나 상속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재산이 상속된다. 또한 직계비속에는 친자, 양자가 포함되며 직계존속에는 친부모, 양부모가 포함된다. 이에 더하여, 태아도 직계비속으로서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북한 상속법은 우선 배우자, 자녀, 양자녀, 계자녀(개가하여 온 아내가 데려온 자녀 혹은 자기가 직접 낳지 아니한 남편의 자녀), 출생할 자녀, 부모, 양부모를 1차 상속인으로 규정한다. 1차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권이 없는 경우 손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양형제자매, 계형제자매(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즉 계부모의 자녀를 말함.⁴⁴⁾)가 2차 상속인이 된다. 1차, 2차 상속인이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상속권이 없는 경우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범위의 측면에서 남북한 상속제도의 큰 차이점은 북한이 계친자관계(繼親子關係)를 법정친자관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⁴⁵⁾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피상속인의 계자녀도 상속권을 보유한다. 남한은 현재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를 혈족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입양 등의 별도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법정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⁴⁶⁾ 따라서, 계친자관계 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북한 가족법 제29조에 따라 계친자관계는 친족관계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계친자관계가 성립하면 계자녀와 친부모의 관계도 소멸하며 계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북한이 체제 유지 및 통치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관계에도 개입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대가정’ 건설을 꾀하기 위하여 법적 가족관계를 의도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⁴⁷⁾

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한 남한⁴⁸⁾과 북한⁴⁹⁾의 상속법제

우리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북한 상속법 제17조(법정상속의 순위)

44)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15진정0541500 결정, 2017. 01. 25. 결정.

45) 김영규(2009), 「북한 가족법의 공법적 특성」, 『국방연구』, 제52권 제2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174쪽.

46) 문선혜(2019), 앞의 책, 73쪽.

47) 김영규(2009), 앞의 책, 175쪽.

상속받는자로는 배우자, 자녀, 양자녀, 계자녀, 출생할 자녀, 부모, 양부모, 계부모가 된다.

배우자, 자녀, 양자녀, 계자녀, 출생할 자녀, 부모, 양부모, 계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양형제자매, 계형제자매가 된다.

앞항에 지적된 상속받는자가 없을 경우에는 4촌안의 혈족이 된다.

북한 가족법 제29조(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의 관계는 없어진다.

5. 남북가족특례법 검토와 쟁점

가. 서설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및 공식적·비공식적 통로로 남북 이산가족 간의 접촉이나 생사 확인 등 인적 교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사이에 상속 관련 분쟁도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①2001년 6월에는 북한 주민 3명이 자신들이 남한 피상속인 손모씨의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남한 대리인을 통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인지⁵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⁵¹⁾ ②2009년 2월에는 북한 주민 4명이 대리인을 통하여 남한의 계모와 이복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아버지 윤모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⁵²⁾ 이처럼, 피상속인이 남한 주민, 상속인이 북한 주민인 이산가족 간의 상속문제를 어떠한 법제와 절차로 해결되어야 하는 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우리 민법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우리 민법은 분단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둘째로 북한 주민에 대한 상속권 인정만을 위하여 70여 년 동안 지속된 우리 민법상의 상속 질서와 체계를 수정할 필요성도 긴급하게 요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의 지위에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민법을 근거로 곧바로 북한 주민에게 상속을 인정하리란 그 현실성,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위와 같은 이산가족 상속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특례법안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2012년 2월 10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 제정

48) 민법 제1000조.

49) 국가정보원(2019), 앞의 책, 287쪽.

50) 인지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혹은 생모가 자기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51) 이은정(2010), 「북한주민의 상속권」, 『가족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149쪽, 서울가정법원 2001드 단50251 사건.

52) 최금숙·안소영(2011),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북한주민의 상속권」, 『법학논집』, 제16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72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8507 사건.

되었다. 남북가족특별법은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유증, 혼인관계를 담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본고에서는 상속 및 그에 수반하는 제도와 절차 위주로 검토하기로 한다.

나. 목적, 기본원칙, 재판관할

남북가족특별법 제1조는 장기간의 분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주며, 그에 기반하여 북한 주민이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동법 제2조는 남과 북의 관계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명확히 재확인한다. 동법 제4조는 남북한 주민 간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리 사법부가 관할권을 행사함을 선언하며, 외국을 전제로 하는 「국제사법」 규정 적용이 불가함을 내포하고 있다. 최성경에 따르면 이 법 제정 전 특별법안 제4조에는 북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로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북한 법원의 관할권 행사를 차단하였다고 한다.⁵³⁾

관련조항⁵⁴⁾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재판관할) ① 이 법이 적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남한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재판관할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1). 서설

상속 절차에 선행하여 북한 주민에게 남한 주민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려면, 남북한 주민 간의 가족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만약,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기

53) 최성경(2012),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가족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176쪽.

54)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4조.

록이 남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과정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단되어 서로의 생사를 알기조차 어려웠던 과거의 상황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 및 이에 대한 전산정보처리가 2008년에 시작된 실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산가족들의 가족관계 대부분은 남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미기재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북한 주민이 남한 재산에 대한 상속권 행사를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남한 주민과의 가족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그 수단으로는 남북가족특별법 제 8조, 제9조가 규정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가 있다.

(2).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부모가 법률상 혼인 중에 태어난 북한 자녀는 남한의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864조는 실체법상의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상의 친자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 차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규정하고 있다. 정다영에 따르면 이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의 법률상태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판결이며, 장래를 향한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을 위한 것은 아니다.⁵⁵⁾ 사건을 첨언하자면, 이는 과거 혹은 현재의 법률상태가 확정되어야 과거에 진행된, 혹은 현재에 진행 중인 상속에서 북한 주민인 피상속인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상속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과거와 현재의 피상속인에게 개시되는 것이지 미래의 피상속인에게 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여전히 그 과정상 어려움이 존재한다.⁵⁶⁾ 제반 절차를 간소화할 남북한 사법절차 통합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인지청구의 소

부모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때에 태어난 북한 자녀, 이른바 혼외자는 남한의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골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지청구란 자신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며, 인지가 확정적으로 성립하면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자관계가 공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북한에서 인

55) 정다영(2019), 「생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법학논고』, 제6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179쪽.

56) 황춘화(2019.10.19.), 「부친과 월남 누나가 북동생 확인 친자확인·소유권이전 소송 대리해」,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87120.html\(2024.11.12.\)](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87120.html(2024.11.12.)).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① 피상속인 윤모씨는 6.25 전쟁 당시에 북한에 처와 2남 3녀를 둔 채 장녀 A만을 데리고 월남하였고, 남한에서 재혼한 부인 권모씨와 사이에 자녀 4명을 두고 1987년 사망하였다. ②2008년 윤모씨의 남한 거주 상속인에 대해서만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 ③윤모씨의 장녀 A는 재미교포 선교사 B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고, ④B는 북한을 방문해 보위부 관계자와 접촉하여 북한에서 생존한 4남매와 접촉, ⑤4남매는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이를 확인하는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을 B를 통하여 A에게 전달, ⑥이를 바탕으로 윤모씨의 북한 자녀 4명이 2009년 서울가정법원에 대리의 형식으로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재판 준비 과정에만 장장 1년 10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언급한 바와 같이 절차상 복잡성과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이를 타개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관련조항⁵⁷⁾

제8조(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① 혼인 중의 자(子)로 출생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이 남한주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민법」 제86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 ① 혼인 외의 자(子)로 출생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남한주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라. 상속재산반환청구권

우리 민법은 사람에 대하여 실종선고 후 일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0조는 상속재산 반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1항에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북한 주민은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사망한 것이 아니게 된 경우)** 그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와 그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우리 법원에서 실종을 취소하고 이를 확정된 경우 상속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4항에 따라 실종선고 외의 사유로 사망처리된 북한 주민도 그 사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삼아 재산을 취득한 자와 그 상속인을 대상으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항은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제반사정을 모르는 경우)** 재산이 현존(現存)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해야 하며, **악의인 경우(제반사정을 아는 경우)** 현존이익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말한다. 한편 제3항은 실종선고의 취소가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선의·악의를 불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혹은 **이 법 시행 후부터 실종선고 취소심판 확정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낸다. 이 법 제10조는 제1항과 제4항에서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면서도 제2항을

57)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9조.

통하여 상속재산의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의 한도로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제3항을 통하여 이 법 시행 이전 그리고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북한 주민의 상속권 행사가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자와 그 상속인, 그리고 제3자의 법률관계를 배반하지 않도록 하였다.⁵⁸⁾ 생각건대, 제10조는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 및 제3자가 기대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조항⁵⁹⁾

제10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 중에서 이 법 공포일 당시에 현존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실종선고의 취소는 이 법 공포일 전까지 한 행위와 이 법 공포일부터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 외의 사유로 사망으로 처리된 북한주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그 생존자는 사망처리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마. 상속회복청구권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에서는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한 바와 같이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참칭상속인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을 때 그가 상속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법 제11조 1항 제1문은 우리 민법 제999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으로,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제2문을 통하여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 혹은 처분된 경우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 일방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원물(元物)을 반환해야 한다. 신영호에 따르면 제

58) 최성경(2012), 위의 책, 187-188쪽.

5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문은 북한 주민이 남한 소재 부동산 등 원물을 상속받아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어려운 분단의 상황이 고려된 규정으로 판단된다.⁶⁰⁾ 또한, 이 법 제10조가 상속재산 반환청구의 경우 현존이익 내 반환을 규정하는 것과 달리, 제11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경우 상대방은 선·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⁶¹⁾

관련조항⁶²⁾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침해당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한편, 상술하였듯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상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존재하며, 남북가족특례법 상에는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할 뿐,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속 문제에 있어서 북한 주민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설 대립이 존재한다. 이를 (1)적용긍정설, (2)적용부정설, (3)판례의 입장, 그리고 (4)사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적용긍정설은 이론적으로 남북가족특례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며,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법이 적용됨을 언급한다. 또한, 이 법의 다른 제도에는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특례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상속회복청구권 조항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재산권과 우리 민법의 법적 안정성을 이익 교량하여 볼 때, 법적 안정성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⁶³⁾

(2)적용부정설은 제척기간의 도래로 인한 권리의 소멸은 명시적 규정에 의해야 한

60) 신영호(2017), 「남북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특례법의 쟁점과 개선과제」, 『북한법연구』, 제17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213쪽.

61) 신영호(2011), 「남북 이산가족 사이의 상속관련 문제해결」, 『법무사』, 2011년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2쪽.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등이 있다.

6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민법 제999조.

63) 박근웅(2019),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 『가천법학』, 제12권 제1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54쪽.

다고 본다. 또한 우리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은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며(독일 : 30년, 스위스 : 참칭상속인의 선·악의에 따라 각각 10년·30년⁶⁴⁾, 오스트리아 : 40년, 일본 : 20년⁶⁵⁾), 이는 기간의 경과만으로 상속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매우 불리한 제도이기에 그러한 제도를 유추해석하여 남북가족특례법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⁶⁶⁾

(3)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적인 선택⁶⁷⁾”이며, “남·북한주민 사이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북한주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나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의 회복은 해당 상속인들 사이뿐 아니라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며, 결국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의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⁶⁸⁾ 다시 말해, 피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피상속인이 북한 주민 이더라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4)사건을 첨언하자면, 남북분단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은 적어도 민법상 법익 보호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결코 진정상속인인 북한 주민에 앞서지 않는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비롯된 권리 침해에 제척기간의 경과만을 이유로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의 법익보다 진정상속인인 북한 주민의 법익이 우선 보호되어야 한다. 이와 별개로 하여, 위 대법원 판결을 평석하건대 우리 사법부는 민법상 거래의 안정성 및 법적 안정성과 북한 주민의 재산권·상속권 중, 전

64) 김진우(2009), 「외국의 상속회복제도가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I)」, 『외국법제동향』, 2009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66, 68-69쪽.

65) 김진우(2009), 「외국의 상속회복제도가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II)」, 『외국법제동향』, 2009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43, 47쪽.

66) 박근웅(2019), 앞의 책, 255쪽.

67)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68) 위와 같음.

자를 더 중히 여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 주민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산가족 간의 재산소송 및 상속문제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바. 재산관리인 제도 및 재산관리 규정

분단 상황 및 남북관계 악화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북한 주민이 재산을 상속받고 이에 대한 소유·점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북한 당국이 중간 과정에 개입하여 착복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은정에 따르면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인 규정은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이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으로 반출되어 군비 등 여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차단하기 위함이다.⁶⁹⁾ 이러한 상황을 예방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남북가족특례법은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에 재산관리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 제13조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을 통하여 타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제15조는 재산관리인에 의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관리인도 제18조에 따라 우리 민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보존행위, 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제19조는 생계, 질병치료 등 북한 주민이 재산을 직접 사용, 관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나, 이를 이유로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이 북한으로 반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⁷⁰⁾

관련조항⁷¹⁾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①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상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북한주민이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법

69) 이은정(2022),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종료 절차에 대한 논의」, 『통일과 법률』, 제49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72쪽.

70) 이형민(2024.05.09.), 「北주민 인정받은 국내 상속재산 460억… 법무부 “반출 사례 0”」,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5161168\(2024.11.13.\)](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5161168(2024.11.13.)).

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①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1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등) ① 상속·유증재산등을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
2.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IV. 분단국가 상속제도 검토

1. 독일

통일 이전 서독은 「지역간사법적용법」을 두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거소⁷²⁾를 기준으로 동독 혹은 서독의 상속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동독 내 재산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서독에 있더라도 동독의 상속법을 적용하였다.⁷³⁾ 나아가, 동서독은 통일 이전 상대 지역 내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들의 상속재산 반출입도 자유로이 이뤄졌다.⁷⁴⁾ 다만, 그 대상을 동산으로 제한하였고, 세관의 통관 절차를 밟도록 한 점이 특이하다. 통관은 물품을 외국에 수입, 수출할 때 거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독일은 통일 전 인적·물적 교류에 대하여 국가 대 국가의 기준을 준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통일 이후 독일은 연방 민법을 제정하여 이산가족의 상속문제를 다뤘다. 상속 개시일이 통일 전인 경우, 기존 질서를 존

7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72)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 기간 지속된 장소를 뜻한다.

73) 이성우(2011), 앞의 책, 77쪽.

74) 이은영(2001), 「이산가족의 화합을 위한 법적 정비」, 『정책포럼』, 2001년 겨울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190쪽.

중하여 동독과 서독의 민법을 각각 적용하였다. 당국은 상속 개시일이 통일 이후인 경우에만 새로운 질서 확립을 위하여 통일 독일의 「독일연방공화국 민법」을 적용하였다.

2. 중국

가. 대만

1992년 제정된 중국의 「대륙지구와 대만지구 인민관계법」에 따르면 대만 주민은 대륙 주민(중국인)과 상속권을 동등하게 보유하며, 상속인이 대만으로 간 사실이 피상속인의 대륙 내 재산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대만 주민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륙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이 생전 유산을 분배하면서 상속권을 갖고 있는 대만 주민의 상속분을 예정해 두지 않은 경우 이는 상속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만 상속인은 중국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⁷⁵⁾ 대만 또한 1993년 「양안관계조례」를 만들어 대만 주민과 대륙 주민의 민사 분쟁 발생 시 대만의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속인인 대륙 주민이 피상속인인 대만 주민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법원에 상속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2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국 또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상속권 행사에 대해서 중국과 대만의 상호 간 법체계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⁷⁶⁾

나. 조선족

조선족은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 국적**의 우리 민족을 일컫는 용어이다. 1931년~1945년 사이 행해진 일제의 이민정책에 의해 개척민들과 빈농들이 만주 지역에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다.⁷⁷⁾ 조선족 상속인 또한 우리 민법에 의거하여 우리 국민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는 중국법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涉外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각종 대외적 민사관계의 법률적용 문제를 위한 법이다. 이 법 제31조는 “법정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 사망 시 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하며, 다만 부동산에 대한 상속은 부동산 주소지 법률을 적용한다.”⁷⁸⁾라고 명시한다. 즉, 문리해석에 입각하면 법정 상속에 있어서 한국 국적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동산에 관하여는 한국의 법이 적용되며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한국 소재일 경우 한국의 법률이 적용

75) 이성우(2011), 앞의 책, 77쪽.

76) 이은영(2001), 앞의 책, 191쪽.

77) 최재현·김숙진(2016), 「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지리적 해석」, 『대한지리학회지』, 제51권 제1호, 대한지리학회, 172쪽.

78) 김선미(2024), 「중국인 예금주의 사망, 예금은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까?」, 『법무사』, 2024년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쪽.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제55조⁷⁹⁾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 특성상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이 자유롭게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 법률관계, 그중에서도 사법관계를 명문화하여 이를 자국법으로 직접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중국 국적의 상속인은 한국의 재산을 중국에서 사용·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82조는 “중국 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효력과 집행에 대한 신청이나 청구를 받았을 때 중국이 체결했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과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 이익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 판결의 효력을 승인” 한다고 규정한다. 즉, 중국 국적의 조선족도 한국 국적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으며, 다만 중국 내 운용을 위하여서는 중국 법원에서 이를 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사전 승인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장성찬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조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에 호혜원칙에 따라야 하며, 한국 법원은 1999년부터 중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해 온 반면 중국 법원은 2019년이 되어서야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바 있다.⁸⁰⁾

3. 비교

독일은 피상속인이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동서독 주민들은 상대 지역에 대한 상속권 행사와 재산반출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었다. 다만, 동독 내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피상속인이 서독 주민인 경우에만 동독법을 준거법으로 인정하는 등 사적 자치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상속인이 대만으로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륙 내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양안관계조례」를 통하여 대만 주민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조선족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자국 상속법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을 적용한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이른바 분단국가 관계이지만, 중국과 우리나라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족이 중국 내에서 남한의 상속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서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바로 미루어 볼 때 남북가족특례법 또한 원칙적으로 남북한 주민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규정 등 북한 주민의

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제55조 “상속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상속인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민이거나 상속재산이 우리 나라 영역에 있을 경우 상속인의 국적,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80) 장성찬(2020.11.06.), 「중국법원의 두 번째 한국 판결 승인 및 집행」,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65544\(2024.11.24\)](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65544(2024.11.24)).

자유로운 상속권과 재산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한, 독일과 중국은 분단 시기 상대 지역에 대한 왕래가 자유로웠고, 상속권까지도 다소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현 남북한 이산가족 상속권 문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남북분단의 장기화 및 북한의 형식적 법치주의적 법 현실로 미루어 볼 때⁸¹⁾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속문제에는 독일, 중국 대륙-대만, 중국-조선족 사례를 일찍 상통하게 대입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즉, 우리 민법과 북한의 상속법을 일대일 대응 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8.15 통일 독트린”(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속문제 해결도 대한민국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남북한 이산가족 상속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북한 주민의 상속권과 남한 내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식이라 사료된다.

V. 이산가족 상속제도의 미비점과 통일 대비 해결과제

1. 서설

이산가족의 상속문제를 위하여 남북가족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여부,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현실적으로 사용·관리하기 어려운 점, 재산관리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등 이산가족 상속문제의 현실적 쟁점들이 산재한 실정이다. 이후 논고를 개진함에 있어서는 이산가족 상속문제의 4가지 현실적 쟁점을 제시하고, “8.15 통일 독트린”⁸²⁾에 입각하여 통일 전후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2. 소송만을 통한 現 이산가족 상속제도와 통일 대비 해결과제

지금의 이산가족의 재산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후 북한 주민에게 자동 상속이 아닌, 북한 주민의 남한 법원에서의 소 제기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북한은 2013년에 헌법 개정을 통하여 공민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였지만,⁸³⁾ 북한은 사실상 형식적 법치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북한 주민들은 북한 내에서 사법부의 도움을 받는 데에 큰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사법부의 독립, 무죄 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권, 진술거부권, 상소권 등 주민들의 재판청구권 및 자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⁸⁴⁾ 이러한 북한 현실로 미

81)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정상국가적인 면모를 보이고자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치를 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훈령, 훈시로 대부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북한에서는 법제는 매우 구체적 인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기에 주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혹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또한, 북한 상속법이 실질적으로 북한 내에 서와 이산가족 상속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82) ‘8.15 통일 독트린’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일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아 선포한 것이다.

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루어 볼 때,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의 재산 상속을 위하여 남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북한 주민이 자신의 상속권 보장을 이유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북한 주민들은 정보 접근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2014년 COI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는 지적이 있었다.⁸⁵⁾ 북한 내 유일·공식 정보제공자인 관영매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을 것임은 쉬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일보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 상속 사례가 알려지면 북한 당국이 주민에 대한 감시를 이중삼중으로 철저히 강화한다고 알려졌다.⁸⁶⁾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이산가족 상속문제를 국가 주도로 해결하는 것을 제안하며, 구체적으로 ‘남북재산관리청’ (가칭) 설치와 ‘이산가족 상속재산 찾기’ (가칭) 정책을 해결방안으로 제안한다. ‘남북재산관리청’ 은 독일의 ‘신탁관리청’ 에 착안한 제도이다. 신탁관리청은 통일 이후 동독 국유재산의 관리, 보존과 더불어 국유재산의 사유화 업무를 진행하였다.⁸⁷⁾ 또한 독일의 경제 부문의 일시적인 체제 전환 대행기관으로써 연방정부의 부담을 경감시켰다.⁸⁸⁾ 이는 통일 한반도에도 이산가족 상속 및 북한 지역 재산권의 제반 정비를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행정절차라고 생각된다. 다만, 신탁관리청은 과거 동서독 이산가족 재산문제보다는 동독 기업의 사유화 및 구조조정을 주 업무로 하였기에, 신탁관리청 제도를 그대로 남북한 통일에 대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재산관리청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속업무와 남한 내 실향민 북한 토지 소유권 복원 및 가액 반환, 북한 지역 토지 및 부동산 사유화를 주 업무로 하는 것으로 예정하였다. 즉, 남북재산관리청은 통일 이전 이산가족 전수조사를 통하여 이산가족인 북한 주민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상속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그러한 상속재산을 북한 주민에게 전달·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지급의 방식으로는 일괄 지급의 방식과 분할 지급의 방식 中 후자가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북한이탈주민·국군포로 피해자들이 남한에 와서 받은 정착지원금을 탕진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그에 수반하여 가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⁸⁹⁾ 등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관념과

84)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2024), 『2024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34쪽.

85)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2024), 위의 책, 42쪽.

86) 이형민(2024.05.09.), 「北주민 인정받은 국내 상속재산 460억… 법무부 “반출 사례 0”」,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5161168\(2024.11.15.\)](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5161168(2024.11.15.)).

87) 이유진(2015), 「독일 신탁관리청의 역할과 시사점」, 『북한이슈』, 제5호, KDB산업은행, 82쪽.

88) 이유진(2015), 위의 책, 98쪽.

89) 조송호(2013.07.17.), 「‘경계인’으로 내몰리는 탈북자들」, 동아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5161168\(2024.11.16.\)](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5161168(2024.11.16.)). 이 기사에 따르면 2011년 탈북한 A 씨는 국내 정착 지원금을 탕진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탈북 여성과의 결혼생활도 파경을 맞았다.

자유세계에서의 생활양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연금의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 보다 나은 제도라고 하겠다.

‘**이산가족 상속재산 찾기 정책**’은 현재 우리 정부의 ‘**조상 땅 찾기**’ 정책에 입안한 것이다. 현재 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부동산 보유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여 상속 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으로만 한정된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제도와 문제점에 착안하여 동산과 부동산 등 재산 일체 확인을 골자로 하는 이 정책을 통일 전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남북재산관리청 설치와 이산가족 상속재산 찾기 정책 시행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남한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극행정을 통하여 향후 통일 한반도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면 북한 주민들은 자유 통일이 자신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8.15 통일 독트린에 명시된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정책들을 통하여 북한인권 개선에도 힘쓸 수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상속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①**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상속재산을 통하여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②**재산권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수용하고, 그를 기반으로 자유로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에 정보 접근권과 자유권을 박탈당하고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에 생존권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남북재산관리청과 이산가족 상속재산 찾기 정책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상속문제가 해결됨과 함께 그들의 정보 접근권과 자유권, 생존권이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인 제도의 미비와 통일 대비 해결과제

현재의 재산관리인 제도에는 다소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 부동산·동산 등 재산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관리인의 보수 규정, 재산관리의 종료 절차와 방법 등에 규정되지 않았다. 2015년에 현금 상속재산관리제도, 재산관리인 보수 지급 문제, 재산관리 종료 절차 등에 관한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귀결되지는 못하였다.⁹⁰⁾ 또한, 최근 북한 주민이 소유한 남한 재산이 남북가족특례법 시행 초기인 2012년 60억에서 2022년 12월 기준 460억으로 약 666% 대폭 증가하였다.⁹¹⁾ 과거에 비해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이 급격히 증가하였기에 이를 긴요하게

90) 이은정(2022), 앞의 책, 71쪽.

91) 김종용(2023.05.25.), 「법무부, 북한주민 국내 재산 보호 강화한다」, ChosunBiz,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5/25/GA4KEYLY4BFBJKPN5KG6HA5QAQ/\(2024.11.15.\)](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5/25/GA4KEYLY4BFBJKPN5KG6HA5QAQ/(2024.11.15.)).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남북가족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예금 등 재산의 경우 재산관리인이 건물수리, 즉 보존행위를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재산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 재산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집수리 등 사실상 재산관리인의 개인적 사용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⁹²⁾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통일 이전 국가가 북한 주민의 재산을 통합·관리, 즉 국가가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게 되었다. 이는 바로 ‘8.15 통일펀드’ (가칭)이다. 과거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를 내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통일 펀드’ 를 출시하였다. 이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8.15 통일펀드와 차이가 있다. 8.15 통일펀드의 재원은 북한 주민들의 남한 상속재산이다. 북한 주민들의 상속재산은 통일을 이루는 데 사용되며, 그 수익률에 따라 통일 이후에 그에 상당한 재산,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 지급을 규정하는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과 같은 맥을 공유한다고 사료된다.⁹³⁾ 통일이 임박한 시점에 ‘공공필요’ 를 통일이라고 상정할 때, 북한 주민들의 재산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면 관련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 남북가족특례법 제18조가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대하여 “재산의 보존행위, 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만을 규정한다는 점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는, 향후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가 시작될 때 법 개정으로 해결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8.15 통일펀드는 통일 이전까지 개인 혹은 여타 민간단체가 아닌 우리 정부가 이를 직접 점유·관리한다는 점에서 재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궁극적으로, 8.15 통일펀드는 지난 8월 15일 통일 독트린에서 발표된 북한 주민을 주체로 하는 통일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4. 통일 이후 남북가족특례법의 한시법화(化)와 부칙 개정(가)안

특례법이란 특정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특수한 문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즉, 남북가족특례법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상속에 관하여 이산가족 상속문제라는 특수한 문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즉, 통일 이후에는 상속문제에 있어서 남북가족특례법 대신 우리 민법의 북한 지역 내 실질적 적용 내지는 남북한 민법 통합이 행해져야 한다. 북한 주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산가족 상속문제 해결에는 우리 민법 또는 통일 한반도의 새로운 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민법 적용 및 남북한 법제 통합이 어떠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추진

92) 김선일(2023.05.25.), 「"북한주민 금융자산 거래 허가 받아야"」,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news/read/461925>(2024.11.26.).

93)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하여야 하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산가족 상속문제가 각종 법령과 제도의 적용 및 통합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특히, 제성호에 따르면 법제 통합은 당사자 간 합의 도출의 과정, 제도적·조직적·재정적 여건의 조성, 통합 이후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 해결, 서로 다른 법체계와 법적 현실에 따른 상호 이해와 존중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제들을 포함한다.⁹⁴⁾ 즉, 통일 이후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란을 예방하고자 남북한 주민 간 상속문제 해결은 일정 기간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야 하며, 일정 기간이 도래하여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법질서에 완전히 편입된 이후 우리 민법 또는 새로운 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통일 이후 남북가족특례법을 한시법⁹⁵⁾화(化)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통일조약 제5조에 따라 통일독일의 입법부는 2년 내에 민법을 포함한 법제의 개정 및 보완을 행할 것을 명시하였다. 법제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는 3년의 기간⁹⁶⁾ 동안 동독의 모든 법은 통일 이후에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북한의 현실로 미루어 볼 때 통일 이후 이산가족 상속문제 해결을 위하여 북한법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따라 북한 지역의 우리 법제 적용 및 새로운 민법 제정시까지, 남북가족특례법의 효력을 유지시켜야 한다. 다만, 남북가족특례법의 부칙을 신설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예컨대, 새로운 민법 시행 시점)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는, 남북가족특례법 부칙 개정(가)안이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개정안

부칙 <법률 제0000호, 20XX. X. X.>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통일 한반도의 새로운 민법이 헌법 제3조에 따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전면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현존하는 헌법, 민법, 상속법, 가족법 등 일체의 구 북한 지역에서 효력을 발하는 법제와 상충되지 아니하며, 이산가족 상속문제의 경우 이 법이 우선한다.

5.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조항 개정(가)안

상술한 바와 같이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상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만 존재할 뿐이며,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함에 그쳤으며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명시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권

94) 제성호(2000), 「남북통일과 법체계 통합」, 『통일정책연구』, 제9권 제1호, 통일연구원, 103쪽.

95) 한시법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96) 통일 독일의 입법부는 2년 내 법제 개정 및 보완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였다.

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적인 선택⁹⁷⁾”이며, 북한주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라도, 민법에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나 이 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법률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사법부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초과하기에 입법적 처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유추적용 및 명시적인 제척기간 규정 도입 등의 판단은 입법에 의하여 이뤄져야 한다. 다시 말해,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새로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생각건대, 남한 주민에게는 민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북한 주민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아예 두지 않는 것은 남한 주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①제척기간 조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②우리 민법 규정상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북한 주민에 맞추어 새로이 정하여야 하고, ③여타 선진국의 제척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는 남북가족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여타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독일 : 30년, 스위스 : 참칭상속인의 선·악의에 따라 각각 10년·30년⁹⁸⁾, 오스트리아 : 40년, 일본 : 20년⁹⁹⁾ 이러한 기산점을 과거 이산가족 생사 확인 시점으로 개정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 아래는, 남북가족특례법 상속회복청구권 조항 개정(가)안이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현행법)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97)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98) 김진우(2009), 「외국의 상속회복제도가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I)」, 『외국법제동향』, 2009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66, 68-69쪽.

99) 김진우(2009), 「외국의 상속회복제도가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II)」, 『외국법제동향』, 2009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43, 47쪽.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산가족인 피상속인의 ‘생사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X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X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③제2항의 ‘생사를 확인한 시점’이란 상속인의 직전 이산가족 상봉시점으로 한다. 다만, 상속인인 북한주민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 않거나 못하였을 경우,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상 등록된 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 한다.

VI. 결론

지금까지 남북한 상속법제 비교, 남북가족특례법 검토, 독일·중국 2개국 분단국가 및 조선족의 상속제도 조명을 통하여 이산가족 상속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통일 대비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상속법제 비교를 통하여 각 법을 비교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남북가족특례법 검토에 따라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들의 남한 내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 법체계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가족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규정, 재산관리인 제도의 미비 등 쟁점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남한 차원에서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이산가족의 상속문제를 포함한 사법관계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 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일과 중국의 상속제도를 살펴보면 현 남북한의 현실과의 차이점을 명백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통일 및 이산가족 상속의 문제는 반드시 남한 주도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다. 다만, 남북한의 상속법제 및 남북가족특례법 中 상속에 관한 부분에만 치중한 나머지 상속 이외에 여타 남북한 주민 간 사법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유류분, 유언, 증여 등 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논하지 못한 점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필자는 상술한 점들을 향후 후속 연구와 결부시켜 다루고자 한다.

전쟁으로 가족과 강제적으로 헤어져 70년의 세월을 한없이 흘러보낸 남북한 주민들의 이산의 아픔은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남아 있는 이산가족들이 사망하여 ‘이산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효되기 전에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생각건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이산가족 문제해결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말~올해 초를 기점으로 북한은 ‘적대적 2국가관계론’을 주창하며 남과 북의 관계를 동족,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

일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사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산가족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명백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남과 북이 동족관계에 있음은 광복(光復)과 6.25 전쟁 등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고, 북한 또한 그러한 역사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산가족은 동족관계인 한민족을 남과 북으로 양분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한반도의 뼈아픈 역사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산가족 문제해결로 북한의 ‘적대적 2국가관계론’의 모순점을 명확히 확립하고, 광복의 진정한 완성인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하며, 국민들의 통일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통일에 대비하여 대한민국 주도로 해결할 수 있는 이산가족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산가족 상속문제이다. 북한의 이산가족들에게 남한 내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그들의 정보 접근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통일 이후 국가 주도로 이산가족 상속문제 해결에 앞장서 북한 주민들의 재산상 자유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에 입각하여 향후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기반을 실질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다.

필자가 앞서 제기한 이산가족 상속문제와 제안한 해결방안들이 향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 및 통일 이후 이산가족 상속문제 해결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이길 간절히 소망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국가정보원(2019), 『북한법령집 上』, 국가정보원.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2024), 『2024 북한 이해』,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2024), 『2024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 논문

김선미(2024), 「중국인 예금주의 사망, 예금은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까?」, 『법무사』, 2024년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김영규(2009), 「북한 가족법의 공법적 특성」, 『국방연구』, 제52권 제2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김영규(2009), 앞의 책, 175쪽.
김진우(2009), 「외국의 상속회복제도가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I)」, 『외국법제동향』, 2009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김진우(2009), 「외국의 상속회복제도가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II)」, 『외국법제동향』, 2009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문선혜(2019), 「통일 이후 남북한 상속법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과 법률』, 제38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박근웅(2019),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 『가천법학』, 제12권 제1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박훈·성중모(2015), 「통일시대 상속제도의 방향과 법교육」, 『법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신영호(2011), 「남북 이산가족 사이의 상속관련 문제해결」, 『법무사』, 2011년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신영호(2017), 「남북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특례법의 쟁점과 개선과제」, 『북한법연구』, 제17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이성우(2011),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상속문제와 그 해결방안」, 『통일과 법률』, 제7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이유진(2015), 「독일 신탁관리청의 역할과 시사점」, 『북한이슈』, 제5호, KDB산업은행.
이은영(2001), 「이산가족의 화합을 위한 법적 정비」, 『정책포럼』, 2001년 겨울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이은정(2010), 「북한주민의 상속권」, 『가족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이은정(2022),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종료 절차에 대한 논의」, 『통일과 법률』, 제49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정구태(2013), 「북한주민의 혼인·친자·상속관계소송에 관한 諸問題」, 『고려법학』, 제7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다영(2019), 「생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법학논고』, 제6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제성호(2000), 「남북통일과 법체계 통합」, 『통일정책연구』, 제9권 제1호, 통일연구원, 103쪽.
최금숙·안소영(2011),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북한주민의 상속권」, 『법학논집』, 제16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성경(2012),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가족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최재현·김숙진(2016), 「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지리적 해석」, 『대한지리학회지』, 제51권 제1호, 대한지리학회.

3. 법조문, 판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 민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2017. 01. 25. 결정, 15진정0541500 결정.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가정법원 2001드단50251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8507 사건.

4. 보도자료

- 김선일(2023.05.25.), 「“북한주민 금융자산 거래 허가 받아야“»,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news/read/461925\(2024.09.26.\)](https://www.naeil.com/news/read/461925(2024.09.26.)).
- 김중용(2023.05.25.), 「법무부, 북한주민 국내 재산 보호 강화한다», ChosunBiz,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5/25/GA4KEYLY4BFBJKPN5KG6HA5QAQ/\(2024.09.15.\)](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5/25/GA4KEYLY4BFBJKPN5KG6HA5QAQ/(2024.09.15.)).
- 김환용(2024.02.23.), 「한국 내 이산가족, 북한 김정은 ‘남북 교전국’ 선언에 절망…통일부 “문제 해결 포기 안 해”», VOA, [https://www.voakorea.com/a/7499434.html\(2024.09.15.\)](https://www.voakorea.com/a/7499434.html(2024.09.15.)).
- 이형민(2024.05.09.), 「北주민 인정받은 국내 상속재산 460억… 법무부 “반출 사례 0”»,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5161168\(2024.09.15.\)](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5161168(2024.09.15.)).
- 장성찬(2020.11.06.), 「중국법원의 두 번째 한국 판결 승인 및 집행»,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65544\(2024.09.26.\)](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65544(2024.09.26.)).
- 정유진(2022.09.08.), 「권영세, ‘이산가족 해결’ 위한 남북당국 간 회담 제안», 시사포커스,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982\(2024.09.15.\)](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982(2024.09.15.)).
- 조승호(2013.07.17.), 「‘경계인’으로 내몰리는 탈북자들», 동아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5161168\(2024.09.15.\)](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5161168(2024.09.15.)).
- 홍금표(2023.02.28.), 「태영호 발의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됐다…매년 음력 8월13일»,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6932/\(2024.09.15.\)](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6932/(2024.09.15.)).
- 황춘화(2019.10.19.), 「부친과 월남 누나가 복동생 확인 친자확인·소유권이전 소송 대리해»,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87120.html\(2024.09.19.\)](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87120.html(2024.09.19.)).

5. 기타

- 김요한(2024.09.17.), 「소멸시효 뜻과 중단사유, 제척기간은?»,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puppuppappa/223585982361\(2024.09.18.\)](https://blog.naver.com/ppuppuppappa/223585982361(2024.09.18.)).
- 법제처(2024.08.15.), 「상속의 개념 및 대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1&cciNo=1&cnpClsNo=1\(2024.09.15.\)](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1&cciNo=1&cnpClsNo=1(2024.09.15.)).
- 통일부(2024.09.12.), 「2024년 8월 이산가족신청자료 통계»,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stat/list.do?mid=SM00000129\(2024.09.15.\)](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stat/list.do?mid=SM00000129(2024.09.15.)).